춘천시 중로1-58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신촌천교 종평면도

## 평 면 도

S=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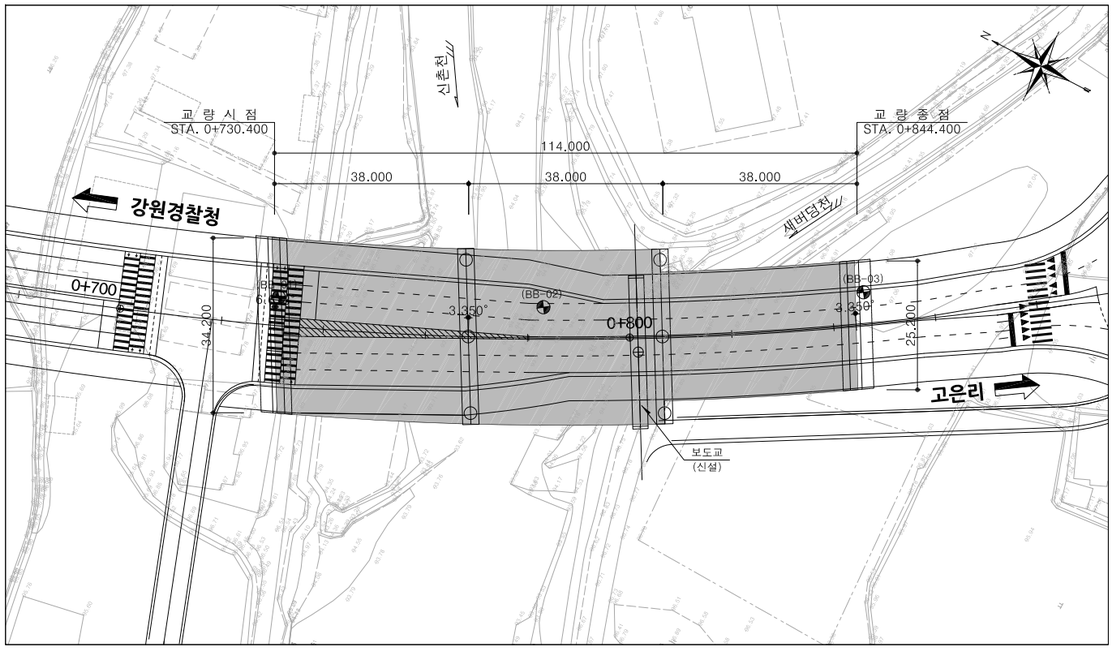


## 횡 단 면 도

S=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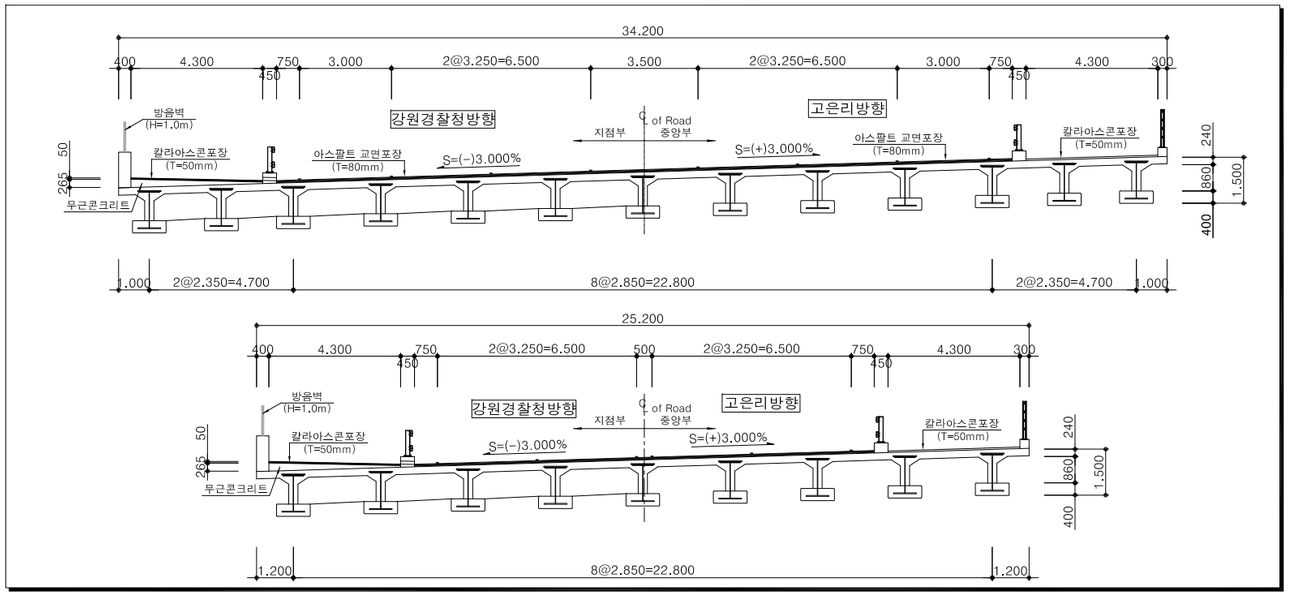


## 종 단 면 도

S=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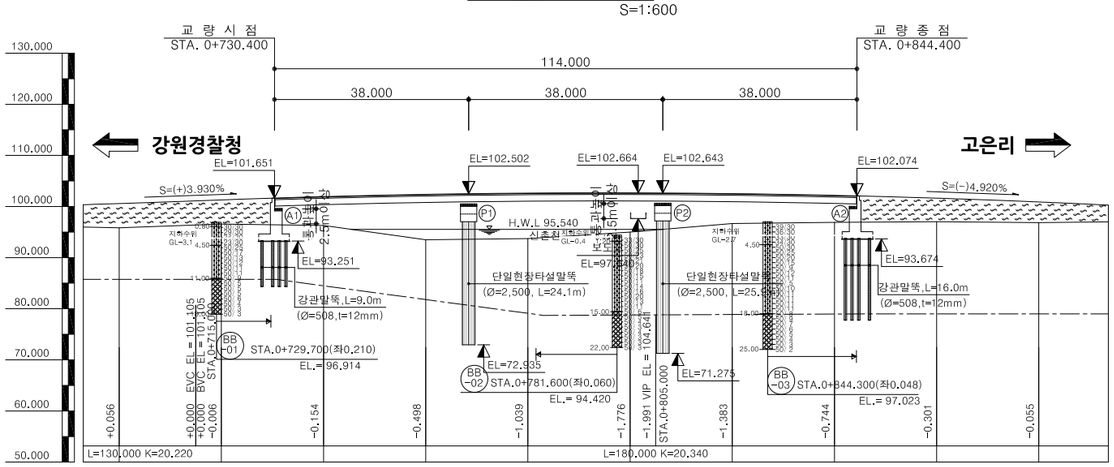


| 종단선형 | S=(+)3.930% H=6.09m, L=150.00m | | | | | | | | | | | | | S=(-)4.920% H=9.35m, L=190.00m | |
|---|---|---|---|---|---|---|---|---|---|---|---|---|---|---|---|
| | 98.550 | | | | | | | | 104.641 | | | | | | 95.293 |
| 계획고 | 100.571 | 101.285 | 101.651 | 101.933 | 102.375 | 102.502 | 102.620 | 102.669 | 102.643 | 102.521 | 102.176 | 102.074 | 101.634 | 100.896 | |
| 지반고 | 95.839 | 96.568 | 96.417 | 96.277 | 93.489 | 93.589 | 93.726 | 95.000 | 95.532 | 96.663 | 96.893 | 96.923 | 97.032 | 96.849 | |
| 추가거리 | 20.000 | 20.000 | 10.400 | 20.000 | 20.000 | 8.400 | 20.000 | 20.000 | 6.400 | 20.000 | 20.000 | 4.400 | 20.000 | 20.000 | |
| 측점 | 0+700.000 | 0+720.000 | 0+730.400 | 0+740.000 | 0+760.000 | 0+768.400 | 0+780.000 | 0+800.000 | 0+806.400 | 0+820.000 | 0+840.000 | 0+844.400 | 0+860.000 | 0+880.000 | |

## 평 면 선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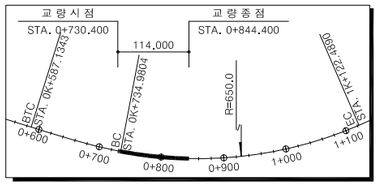


## 종 단 선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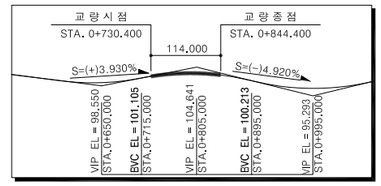


## 편 경 사 도

## 신 축 량 산 정

(단위:mm)

| 지간 \ 항목 | 온도변화 | 건조수축 | CREEP | 보의처짐 | 소 계 | 신축여유량 | 지반변동 신축량 | 합 계 | 설계유간 |
|---|---|---|---|---|---|---|---|---|---|
| (A1) 57.0 | 34.20 | 5.70 | 11.40 | - | 51.30 | 19.12 | 7.50 | 77.92 | 100 |
| (A2) 57.0 | 34.20 | 5.70 | 11.40 | - | 51.30 | 19.12 | 7.50 | 77.92 | 100 |

## 위 치 도

S=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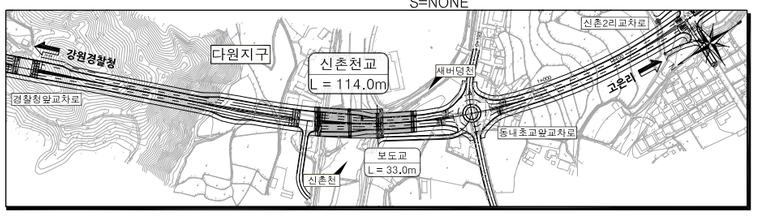


## NOTE

1. 도면의 모든 치수는 mm단위이다.
2. 종단면상의 치수는 도로중심에 대한 치수이다.
3. 모든 구조물은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 확인측량은 매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물의 위치 및 EL.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기초의 심도는 지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초의 시공계획 수립시 지지층의 상태를 조사하여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6.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7. 하부기초 설치시 반드시 지반조건을 확인한 후 확실한 지지층에 시공하여야 하며, 지질조건이 설계시와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8. 기초공사시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기초굴착 후 굴착 지반에 대한 FACE MAPPING을 시행토록하고 기존 지반의 절리나 불연속에 대한 정밀검사와 보강(GROUTING)을 실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교량의 뒷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순서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에 대한 상세는 보고서 선형계산서를 참조한다.
13.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에는 슬래브 시공시 낙하물방지공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4. 종단계획고상의 EL.값은 교량 포장상단으로 도로중심선 EL.이다.
15. 가설방법, 가시설물 및 교량가설시 종평면도를 참조하여 가설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설하여야 한다.

##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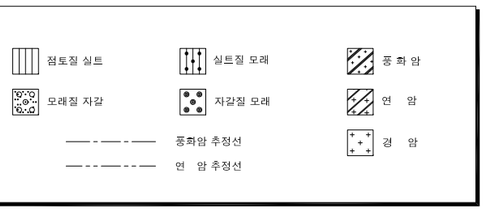


| 춘천도시공사 | 사 업 명 | 춘천시 중로1-58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 | | 위치정보 | | 도 면 명 | 신촌천교 종평면도 |
|---|---|---|---|---|---|---|---|---|---|
| (주)동성엔지니어링 DONGSUNG ENGINEERING CO.,LTD | 시설/공구 | - | | | | 축 척 | S = 1 : 600 | | |
| | 건설분야 | 토목 | 건설단계 | 실시설계 | | 도면번호 | C0050101 - 002 | 편철번호 | 5.001 |
| | 개정번호 | 날짜 | 개 정 내 용 | 과업책임자 | 분야별책임자 | 설계자 | | 적용표준 | GED-01-24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실시설계 | | | | | | |